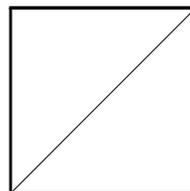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40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2. 2. (제 21 차)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2. 2.

## 1. 의결주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시장성 차입 확대 등 주채무계열의 자금조달이 다변화됨에 따라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에 총차입금 기준을 추가하고, 은행의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은행권 기업신용공여가 일정 비율 이상인 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도록,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 3. 주요골자

계열 총차입금이 명목 GDP의 0.1% 이상이고, 계열의 은행권 신용공여가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의 0.075% 이상인 계열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도록 선정 기준을 변경하고, 총차입금 해당 계정과목을 명시(안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완료(비중요규제)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9.12.20.~2020.1.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제79조제1항과 같은 항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독원장은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총차입금이 전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의 1,000분의 1이상이고,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중 자산규모, 당해 계열기업군내에서의 영향력 등 실질적인 지위를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주기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계열기업군은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계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거나, 제4호의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경우

제7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총차입금은 재무제표 부채계정 중 다음 각 호의 합계를 말한다. 단, 현재가치할인차금 등 각 호의 가산 또는 차감항목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1. 차입금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 사채
3. 자산유동화 차입금
4. 리스부채
5. 1~4호와 유사한 차입부채 계정

제7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는 삭제한다.

제79조제3항은 제4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삭제한다.

④ 제1항의 기업 신용공여 잔액은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 총액에서 가계 신용공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79조제4항과 제5항은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에 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을 지도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여야 하며,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 및 취약할 우려가 있는 주채무계열과는 각각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9조(주채무계열) ① 감독원장은 <u>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u> (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후단 생략)</p> <p>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u>제17조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u> 해당하는 경우</p> <p>2~4. (생략)</p> <p>&lt;신 설&gt;</p>	<p>제79조(주채무계열) ① -----  <u>「은행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총차입금이 전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의 1,000분의 1이상이고,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u>-----                      ----- . (후단 현행과 동일)</p> <p>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u>제21조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거나, 제4호의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u> 해당하는 경우</p> <p>2~4. (현행과 동일)</p> <p>② <u>제1항의 총차입금은 재무제표 부채계정 중 다음 각 호의 합계를 말한다. 단, 현재가치할인차금 등 각 호의 가산 또는 차감항목을 반영하여 산정한다.</u></p> <p>1. 차입금</p> <p>2. <u>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 사채</u></p>

② (생략)

1~6. (생략)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8.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③ 제1항의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

2. 제2항제7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3>에서 정한 신용공여

3. 제2항제8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에서 정한 신용공여

4. 제2항제9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리스자산중 미회수원금, 신기술금융자산, 여신성

3. 자산유동화 차입금

4. 리스부채

5. 1~4호와 유사한 차입부채 계정

③ (현행과 동일)

1~6. (현행과 동일)

<삭 제>

<삭 제>

<삭 제>

④ 제1항의 기업 신용공여 잔액은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 총액에서 가계 신용공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p><u>금융자산, 기계류할부금융, 사모사채, 기업어음. 다만, 제2항의 금융기관 및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수출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경우는 제외한다.</u></p> <p>④~⑤ (생략)</p>	<p>⑤~⑥ (현행과 동일)</p>
<p>제82조(주채권은행의 기능) ①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에 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u>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주채무계열과는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u></p> <p>②~③ (생략)</p>	<p>제82조(주채권은행의 기능) ① ----- ----- ----- ----- -- <u>한다.</u></p> <p>②~③ (현행과 동일)</p>
<p>④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을 지도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여야 하며, 재무구조평가 결과 <u>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과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u></p> <p>⑤~⑦ (생략)</p>	<p>④ ----- ----- ----- ----- <u>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 및 취약할 우려가 있는 주채무계열과는 각각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정보제공약정 -----.</u></p> <p>⑤~⑦ (현행과 동일)</p>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기업구조개선과	신용감독국
연 락 처	02-2100-2923	02-3145-8388